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산림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○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산림기본계획의 수립·변경 추진에 있어 의견 청취를 위한 산림정책협의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는 내용으로 「산림기본법」이 개정(법률 제19803호, '23.10.31.공포, '24.5.1.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 마련(안 제6조의2 신설)
- 나. 산림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마련(안 제6조의3 신설)
- 다. 산림정책협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사항 규정(안 제6조의4 신설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

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등)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에서

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법 제10조에 따른 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사항
2. 법 제12조에 따른 산림과 임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산림기본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산림정책협의회(이하 “정책협의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정책협의회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며, 위원은 산림, 경제, 환경, 국제협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여성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

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

2.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실무 경험에 있는 사람

3.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의 연구 또는 실무 경험에 있는 사람

4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
실무경험이 있는 사람

5.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정책
협의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
로 한다.

⑤ 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산
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제6조의3(산림정책협의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정책협의회 회의를 소집
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
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
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 운영에 필요한
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6조의4(산림정책협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) 산림청장은 제6조의2제

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
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
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6조의2(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등)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</u> <u>1. 법 제10조에 따른 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사항</u> <u>2. 법 제12조에 따른 산림과 임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에 관한 사항</u> <u>3. 그 밖에 산림기본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 <u>②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산림정책협의회(이하 “정책협의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 <u>③ 정책협의회 위원장은 산림청차장이 되며, 위원은 산림, 경제, 환경, 국제협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</u>

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여성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

2.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실무 경험에 있는 사람

3.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의 연구 또는 실무 경험에 있는 사람

4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

5.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정책협의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

<신 설>

<신 설>

만료되는 것으로 한다.

⑤ 정책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제6조의3(산림정책협회의 운영)

① 위원장은 정책협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정책협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6조의4(산림정책협회 위원의

해임 및 해촉) 산림청장은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	<u>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</u> <u>2.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</u> <u>3. 직무태만, 품위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 <u>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</u>
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산림청 산림정책과	
연 락 처	(042) 481 - 4135